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8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김민전·김기웅·주호영

박상웅 · 김용태 · 김종양

김도읍 • 이인선 • 이달희

최수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, 신·편입학과 관련된 부정·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,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,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66조의4제1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678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

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4제1항 단서 중 "각 목 및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제5호"를 "각 목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제5호 및 제6호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) 제66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의4(징계 사유의 시효) ①	제66조의4(징계 사유의 시효) ①
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	
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	
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	
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	
다. 다만, 징계 사유가 「국가	
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	
날부터 5년 이내에, 「국가공	
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	
<u>각 목 및 「교육공무원법」 제</u>	각 목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
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조제5호 및 제6호
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	
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	
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